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제조세 Update

조심 2019 서 3067, 2021.02.22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증액된 로열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15 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이전소득금액도 익금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는 점,
-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쟁점이전소득금액과 같이 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 본부

29 March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 또는 간접비용의 경우도 과세표준(분모)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국외원천소득(분자)에서 차감하고 있어 쟁점이전소득금액의 경우에도 분모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도 포함하는 것이 계산상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 중 국내 세율을 적용한 부담세액(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되는 것이므로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과다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없으면 실제로 공제 가능한 세액도 없음),
- 쟁점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000 간의 사용료소득 수수 관련 국제거래에서 국조법 시행령 제 5 조 제 1 항 제 5 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과세조정, 즉 000의 영업이익률과 비교대상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여 그 초과이익을 이전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이전소득금액은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이 혼재되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시 쟁점 이전소득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2.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캐나다: 2019년 상호합의절차(MAP) 보고서 발간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은 최근 2019년 캐나다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ss, "MAP")에 대한 보고서(이하 "MAP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캐나다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가격 거래 및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요청 및 진행, 각종 통계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경

캐나다의 상호합의절차는 국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캐나다 상호합의절차의 근거는 각 조세조약이며 일방 또는 쌍방 정부의 조치가 조세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납세자는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 MAP 규정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 "CA")(*)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부 장관 또는 국세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2019년 CRA의 MAP 처리 현황

2019년 캐나다의 MAP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월 기준, 기 신청 MAP 건수: 147건
- 2019년 신규 신청 건수: 75건
- 2019년 종결 건수: 60건 (2018년 기준, 126건 대비 약 50% 감소)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CRA의 MAP 평균 처리 기간은 17.6개월이었으며, 이는 2018년 MAP 평균 처리기간이었던 23개월에서 약 5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입니다. 또한, CRA는 캐나다에서 신청된 MAP 사례들은 약 16개월만에, 타 과세당국으로부터 신청된 MAP 사례들은 평균 23.5개월만에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CRA는 자국 및 외국에서 신청된 MAP 사례들을 모두 평균 24개월 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AP 결과

2019년에 종결된 60건의 MAP 사례 중, 41건(약 68%)은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나머지 19건은 이중과세가 일방국에서만 구제되었거나, 납세자가 MAP 신청을 철회했거나, 혹은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 또는 권한 있는 당국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중과세로부터 부분적인 구제 또는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이전가격 관련 MAP 사례

해마다 CRA가 다루는 MAP사례의 약 77%가 협상 가능한 이전가격 관련 사례였던 만큼 이중과세 문제나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조약의 적용뿐만 아니라 양자간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2019년 CRA의 이전가격 관련 MAP 사례는 총 124건으로, 2018년(114건) 대비 증가했으며, 동 사례들은 대부분 불과 19개월만에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CRA 가 담당했던 MAP 사례 중, 상대국 과세당국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아 협상이 불가했던 MAP 사례는 2019 년 기준 78 건으로, 2018 년(118 건)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이전가격 보고서 및 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지침 발표

독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BMF")는 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에 관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발표)

본 지침은 모든 과세기간에 적용되며, 납세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세무조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요청 범위 확대

독일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조사 시 이전가격보고서, 사업보고서, 의견서 및 기타 국외특수관계인에 관한 자료 이외에도 이메일, 문자메세지 기록 및 기타 전자매체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특수관계자사이의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 및 문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한가지 이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시 과세당국이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사대응 목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확대

BMF의 행정지침에는 과세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더 광범위한 소득조정을 통한 과세처분을 시도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지침에 따르면 이전가격과 관련된 실제 사실관계와 이전가격 보고서 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예: 회사의 경제적 실질이 상이한 경우, 또는 비교가능회사들이 실제 회사의 기능/위험 분석결과와 상이한 경우) 해당 이전가격 보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독일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기능/위험 분석에 대한 다른 해석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본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전가격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각 개별 거래 및 개별 분석대상연도에 대한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제출 지연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최대 금액은 거래 유형 수 및 과세대상연도에 따라 백만 유로 (EUR)에서 해당 금액의 몇 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납세자가 제대로 된 내용의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검증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확대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전가격 관련 납세자의 자료 제출 협력 증대 범위 내에서 과세당국에 증거자료를 제공할 의무(예: 이메일 기록 제출 등)가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 강화

과거에는 납세자가 적용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왜 적합한지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통해 납세자가 적용하고 있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상가격 분석틀(Framework)을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EU: 국가별보고서 공시 안건 논의를 위한 3자 협의 개최

EU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국가별보고서 공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목표로 '3자협의'(Trilogue)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EU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위원회는 금번 3자협의를 통해 국가별

보고서 공시 대상기업, 민감 또는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조항(Safety clause), 시행시기 등 안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가별보고서 공시 개관

1. 공시의무자:

1) 최종 모회사가 유럽법인·거주자인 경우

- 공시대상: 2년 연속 연결매출액이 EUR 7.5억 이상(약 1조 원)인 다국적기업

2) 최종 모회사가 비유럽법인·비거주자인 경우

- 공시대상: 유럽지역 사업활동이 중견기업, 대기업 및 지점 수준의 일정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기 threshold를 초과한 다국적기업
- 특이사항: 최종 모회사의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공시하거나 유럽 소재 자회사 혹은 지점 중 한곳을 지정하여 등록부(Trade registry)와 함께 관할 세무당국에 보고서 제출 가능. 만약 최종 모회사가 공시의무 미 이행 시, 동 의무는 해당 기업의 유럽 내 자회사 혹은 지점으로 이전되며 해당 자회사 혹은 지점은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시해야함

2. 보고서 기재사항(공통): 사업특성, 임직원 수,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함한 매출액,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법인세 납부액, 유보이익

** EU회원국 및 비EU회원국 모두 국가별보고서에 상기 정보를 개별 공시해야 함*

*** 국가별보고서 공시의무자들은 상업적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개하지 않은 정보항목이 무엇인지 보고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함*

3. 공시방법

1) 최종 모회사가 유럽법인·거주자인 경우:

- 기업 웹사이트 및 관할국 국가중앙등록부, 상업등록부, 또는 관련 EU회원국 기업등록부에 제출

2) 최종 모회사가 비유럽법인·비거주자인 경우:

- 기업 웹사이트 또는 유럽지역내 자회사 및 지점 중 한곳 지정 후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

4. 시행일: 미정

5. 기타 주요 공시 요건

- 다국적기업은 EU이외 각 조세관할지역(tax jurisdiction) 별 총체적 정보를 제시해야 함 (글로벌 차원의 소득분배, 납부세액, 각 조세관할지역별 사업활동 장소 등)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고정자산, 특혜세제, 정부 보조금, 정치 관련 기부금 항목 공시
- 회사는 소재국 관할 당국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민감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일관성/통일성 있는 보고서 양식 요구
- 회사는 보고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럽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등록부(public registry)에 제출해야 함
- 공시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금액 미정)

3. 관세 Update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관련 협정(특혜)관세 적용 지원방안 안내

최근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1.2.1)에 따른 미얀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애로로 우리 수입기업은 협정관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협정(특혜)관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협정(법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최빈 개발도상국 특혜")이며, 지원대상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미얀마 비상상황이 정상화 된 날(별도 통보)부터 30일(다만, 2021.2.1부터 최대 1년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미얀마산 수입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입니다. 다만, 미얀마 비상사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지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은 '지원대상 기간'까지 연장되며,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이 수리전반출 후 '15 일 이내'에서 '지원대상 기간'까지 연장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 받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재신청, 협정관세 적용 내역 변경 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FTA관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 등의 집행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히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위반,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 HS번호 등 협정관세 적용 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 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용 받고자 하는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 받았으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의 변경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역의 경우, 별도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 등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